

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서

수탁 기관	기관명	담당부서 (담당자)	전화번호 (팩스번호)
	주소		
연장신청기간	일 (1회 30일 이내 연장 가능)		
수탁내용 및 연장신청사유			
※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		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주식의 처분시한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수탁기관의 장 (인)

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

업무 처리절차

